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의 읽기 및 쓰기 문항에 관하여*

문영진**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전문대학원 입학시험 읽기·쓰기 문항의 주요 내용
3. 전문대학원에 대한 요구
4. 사회학적 상상력의 필요 : 대학의 변모
5. 전제와 제언
6.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대표적인 고부담 시험인 전문 대학원 입학시험의 읽기 및 쓰기 문항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 본 다음,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간략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글이다.

먼저,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용어의 차이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첫째, 이 자리에서 전문 대학원은 ‘의학 전문대학원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이하 ‘의치학 전문대학원’)과 ‘법학 전문대학원’을 의미한다. 양자는 분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38회 학술발표대회(2007. 12. 1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명 다르지만 ‘언어 이해’ 영역(의치학 전문대학원의 ‘언어 추론’ 영역을 포함한다. ‘언어 이해’ 영역으로써 양자를 포괄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시험의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그 성격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김주훈 외, 2006-). 두 시험의 차이를 생각할 때 그 성격을 두고 어느 편이 크고 어느 편이 작은가를 논하는 것은 물론 어불성설일 것이나 법학 전문대학원 쪽이 사회적 관련망 등에서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다만 5장 ‘전체와 제언’ 항 등에서 구체적인 문항을 예로 들어야 할 경우가 있으면 네 번의 실시 경험을 추적하고 있는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시 문항을 제재로 할 것이다.

둘째, ‘읽기’와 ‘쓰기’는 각각 법학 적성 시험의 ‘언어 이해’와 ‘논술’(소위 ‘에세이’) 문항을 지칭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과목’과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용어의 위계를 고려하여 ‘언어 이해’와 ‘추리·논증’, ‘논술’은 <과목>에, ‘언어 이해’의 ‘인문’이나 ‘사회’ 혹은 ‘과학 기술’(<표 2> 참조)은 <영역>으로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나 이 자리에서는 ‘영역’이라는 말을 확장해서 혼용하였다.

셋째, 법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그 입학에 관한 시험에 대한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법학적성시험(LEET)’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김주훈 외, 2006-), 2008년 1월에 실시된 실제의 예비시험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외는 달리 법학 전문 대학원 입학시험이라는 용어를 주장하는 입장도 가능한 듯하다. 두 용어의 사용에 따른 강조점의 차이를 둘러싼 시비가 가능할 것이다. 대개 두 용어 중 전자인 법학적성시험이 조금 더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양자의 차이는 무시하기로 한다.

다음, 이 글의 시각과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첫째, 전체적으로 ‘언어 이해’ 영역의 경우 수능 언어 영역으로부터 ‘진화·발전’해 온 것으로, 역사성을 고려하면 그 장점과 단점을 공유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말한대기보다 대개 ‘언어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다만 글의 중간 중간에 그리고

말미에 간단한 제언 몇 마디를 덧붙이고자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다음 문제를 약간은 고려하고자 한다. 시험에 대한 고찰이 대개 내적 정합성의 차원에서 연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내재적 연구),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시각의 한계에 유념하여 메타인지적 차원이나 이론적 차원을 조금은 고려할 것이다(시험의 사회학적 측면). 다시 말하면 시험 현상의 포괄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험의 의미론적 차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험이 작용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시험의 화용론적 차원)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형일, 1987).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전문대학원 입학시험 읽기·쓰기 문항의 주요 내용

1) 전체의 흐름

문항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개괄하기 전에 이 시험의 맥락을 이루는 전체의 흐름을 개괄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추진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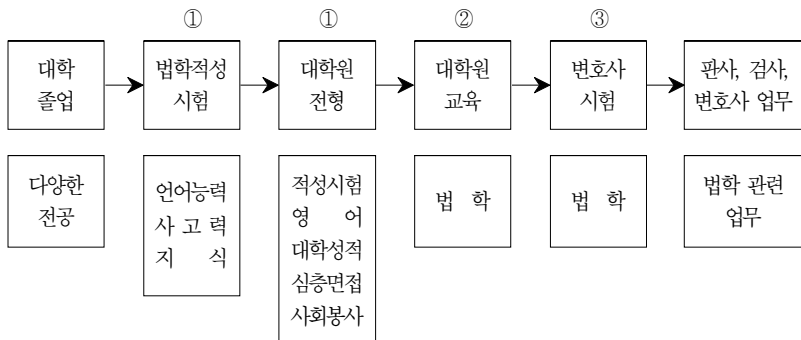
- 2003. 6. 10. 청와대, 사법개혁 추진안으로 로스쿨 검토
- 2005. 5. 17.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 2005. 11. 22. 로스쿨 법안 교육위 상정.
- 2006. 9. 11.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
- 2007. 7. 3. 국회 본회의, 로스쿨 법안 통과
- 2007. 7. 30. 교육부, 로스쿨 교과과정 기초 기준 제시
- 2007. 8. 1. 교육부, 시행령안 입법예고. 대학별 정원 150명, 교수당 학생수 12명 이하.

- 2007. 10. 5.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등 13명) 발족.
- 2007. 10. 26. 교육부총리, 국회 교육위에 총 입학정원 2천명 재보고, 확정.
- 2007. 10. 30. 교육부, 법학전문 대학원 설치인가신청공고, 5대 권역별 배분지침 발표.
- 2007. 11. 30. 전국 41개 대학, 총 3천960명 정원으로 인가신청서 제출.
- 2007. 12. 현직조사단 신청대학 실사.
- 2008. 1. 법무부 실무위원회, 로스쿨 변호사 자격시험 초안 발표.
- 2008. 3. 법학교육위, 인가 대학 예비 선정 명단 발표.
- 2008. 6.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 자격시험 법안 제출예정.
- 2008. 8. 교육부, 로스쿨 지원자 대상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
- 2008. 9. 법학교육위 6개월간 인가기준 충족여부 확인.
- 2008. 10. 교육부, 최종 설치인가 대학 및 대학별 정원 발표.
- 2008. 11. 대학별 입학전형 공고 및 전형실시.
- 2009. 3.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 2012. 2. 첫 번째 로스쿨 졸업자.
- 2012. 3. 로스쿨 변호사 자격시험, 첫 로스쿨 변호사 배출.

(「로스쿨 추진 주요 일지」, 『교수신문』, 2007. 12. 7.)

2) 법학대학원 입학시험의 시계열적 위치

<표 1> 법학적성시험의 시계열적 위치(김주훈 외, 2006- : 22)



과정 내부에서 가중치의 중요성. 여기에서 중요한 결절점은 결국 법학 ① 전문대학원 입시 문항의 질, ② 대학원 교육의 질 자체 및 ③ 변호사 시험의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②는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학 전문대학원의 요구 가운데 핵심이라 할 것이 법학 교육의 내실화라면 결국 핵심은 당연히 ②이다. 여기에 비추면 ①은 ②를 위한 전제 혹은 문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②는 ③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다. ①과 ②가 잘 되어 것으로 가정한다면 그리고 개혁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③은 완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③이 강조된다면 이는 종래의 사법 시험이 지닌 역기능의 반복이라는 커다란 부작용의 가능성에 노출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그 자체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는 문제, 자칫 ②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개혁의 효과가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법학대학원 교육 내실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로 나아간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종래의 사법 시험의 지연 효과만을 가져온다거나, 사회적 비용만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이는 ‘개혁’의 취지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 될 것이다.

3) 언어 이해 영역

첫째, 전체 시험 과목. ‘언어 이해’(언어 추론은 ‘추리 논증’ 영역과의 관련 속에서 존재하며, 2006년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시험의 출제까지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논술’(에세이) 영역까지를 포함하면 전체는 세 과목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학 전문대학원 입시의 과목은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3과목) 등이 된다.

둘째, ‘언어이해’의 인지 활동 유형은 크게 ‘분석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로 구분된다.

- (1) “분석적 이해를 묻는 문제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지문에 명시된 문제이다. 동의어 변환, 의미상 대등한 구절로의 변형, 핵심 정보를 유지하는 압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어디까지가 명시된 정보이고 어디부터가 암시된 정보인지 구별하는 것이 모호할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문 조회와 어휘력 및 일반적인 언어구사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가리킨다. 이하 “ ”안의 진술은 김주훈 외, 2006년부터 전제함.” 말하자면 이는 ‘사실적 이해’ 곧,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를 찾아내거나 최소한의 재구성을 통해서 발견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 (2) “추론적 이해란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개입되는 추론은 연역 추론이거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귀납 추론들이다. 귀납 추론의 경우에는 개연성의 정도 때문에 문항의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모호함이 출제 과정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유형의 문항은 문면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을 통해서 발견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대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 (3) “비판적 이해란 <지문 안에서> 말하거나 <지문으로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대하여> 말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를 가리킨다. 텍스트 밖에서 글쓴이의 관점이나 태도를 짚어본다거나, 지문의 중심 논지를 반박 비판하는 등의 일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수험자의 시각을 객관화하거나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유형의 시험에서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 (4) “창의적 이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거나, 대안 가설을 제시하는 등 ‘지문을 넘어서’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가리킨다. 선다형 문제에서의 한계는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능력 자체의 필요성은 모두가 동의하므로 최소한으로라도 출제하도록 한다.” 매우 필요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출제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항들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언어 이해’의 내용 영역은 크게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문학예술, 이렇게 네 영역으로 구분한다. 각 영역은 다시 세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대략 열두 분야의 학문 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문학 수와 시험 시간’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은 각각 40문항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시험 시간은 대개 90분에서 120분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언어 이해’ 영역 시험의 개요는 다음의 <표 2>에서 볼 수 있다.

<표 2> ‘언어이해’의 내용 영역 및 인지 활동 유형

인지 활동 유형 내용 영역	분석적 이해 analytical understanding	추론적 이해 inferential understanding	비판적 이해 critical understanding	창의적 이해 creative understanding
인문 humanities				
사회 과학 social sciences				
과학 기술 science & technology				
문학 예술 arts & literature				

덧붙여 ‘추리·논증’ 영역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추리 논증' 과목 전체의 이원분류표

인지 활동 유형 추리의 내용 영역		추 리 (reasoning)			논 증 (argumentation)			인지 활동 유형 논증 내용 영역	
		논리 추리	수리 추리	논리 퍼즐	분석 및 재구성	반론 및 논쟁	판단 및 평가		
추리학	논 리 학								
	수 학								
내용학	인 문 학							인 문 학	이론적 논변
	사회 과학							사회 과학	
	과학 기술							과학 기술	
								일상적/도덕적 논변	실천적 논변
								정책/의사 결정	
								법적 논변	

이런 내용을 볼 때 문항 수 등에서는 특별히 달라져야 할 이유를 현재로서는 별로 찾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다형 시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터인데, 결국 시험 형식의 변화에 대한 실제적이면서 가능한 새로운 상(像)의 도출은 시험 방향에 따른 시험 이념 선택의 문제인 듯이 보인다.

결국 위에서 보듯 ‘언어 이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소위 ‘비문학 읽기’나 의치학 전문대학원의 ‘읽기 분야’와 대동소이한 듯하다. 그것들이 분화·발전한 것인 까닭이다. 그렇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의치학 전문대학원 시험과는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험의 내용을 가늠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첫째, 인문학이나 특히 사회과학 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생긴다.

셋째, 의사들의 업무와 비교할 때 법조계 종사자의 경우 읽기와 쓰기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까닭에 긴 지문의 빠른 독해도 어느 정도는 필수

적인 듯이 보인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출제 상황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므로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출제 위원 구성, 출제 과정, 출제 후 관리(정답 이의제기 및 처리) 등 시험 관리 문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출제 캠프 내의 집중 강도를 높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출제 환경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에 따른 운영의 지혜가 강제되는 대목이다.

아직 연구 중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논술’ 과목의 시험 개요가 모습을 갖추고 조만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예비 시험을 거치면서 시험의 분명한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것은 예비 시험 이후, 그리고 시행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새롭게 생겨나고 해결되는 일이 화용론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언어 이해의 특성상 ‘추리 논증’과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출제의 과정을 통해서 상황적 합리성에 따라서 실용적(화용론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예컨대 지문의 길이 자체에 의한 변별, 맥락 정보의 양에 의한 변별, 문장 기술 방법에 의한 변별 등이 될 것이다.

4) 논술 영역

‘언어 이해’ 문항이 아무리 좋은 문항으로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이 선다형 문항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논술’과 같은 서답형 문항이 요청된다.

‘논술’에 대해서는 출제를 시행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되 채점은 각 대학원에 맡기는 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6년에 실시된 법학적성시험 공청회에서 패널·방청객들이 강하게 요구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연구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법학적성시험에서 논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현장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을 존중하여 본 연구진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법학적성시험에서 논술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김주훈 외, 2006년 : 66)

이러한 것은 일본의 예를 답습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채점의 물리적 한계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논술’ 문항의 전모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하는 데 제약이 따르지만, 조심스럽게 다음의 문제를 제기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분량 문제. 핵심적인 것은 비판적인 분석 및 그에 근거한 자기 의견 제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형식적인 부가사항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그 단일 문항(비판적 분석과 자기 의견 제시)의 분량 문제일 것이다. 이 분량을 예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소위 ‘상위권’ 대학의 입시에서의 분량보다는 훨씬 많아야 할지 모른다(최상급 학생들의 4년 배운 후의 지식과 사고력 수준을 감안할 때). 그 분량을 숫자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2,500에서 3,000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문제에 대한 상식적 해결이나 심리적 해결 혹은 도덕적 해결이 아닌 대학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 해결, 곧 ‘개념’에 근거한 분석과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어지는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1) 첫 번째 방향의 문제. 이 분량 그대로 시행되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첫째, 속도 테스트의 문제. 이 경우 시험 시간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2시간 이상의 시험 시간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파워 테스트가 아니라 속도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속도 테스트의 규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문항의 단순화의 문제. 이렇게 되면 시간의 제약으로 독서 이해력을 직접 측정하는 문항(예컨대 읽기 능력 자체를 서답형으로 묻는 요약 문항) 등이 생략될 수 있다. (2) 두 번째 방향의 문제. 그렇지 않았을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위험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학 수준에서의 암기식 답안 가능성, 그리고 문

제 해결력이나 시간의 제약이라는 조건으로 인한 효과이긴 하지만 사려 깊은 생각의 제시가 아니라 주로 작문 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논술 문항 유지의 필요. 이 문제는 시험의 진행에 따라 화용론인 맥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 듯이 보인다. 결국 ‘논술’ 문항의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이 문항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 논술 문항 개발. 결국 적절한 난이도를 가진 좋은 논술 문항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외의 경험 예컨대 서울대학교 논술 시험의 역사에서 그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는 듯이 보인다.

넷째, 두 가지 제안. (1) 우리의 현실에서 제재의 ‘보편성’(소위 ‘범교과성’)을 유지한 채 일반적인 소재로 논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경우 학문적인 상식을 테스트할 항목들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취도형 문항에 기초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혼합한 문항들을 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 ‘논술’ 문항은 유럽의 ‘성취도’형 문항과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성취도형 문항과 범교과형 문항의 대립을 적절히 절충시키는 출제가 우선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어떤 과제에 대한 대학에서의 이해 정도를 질문하는 성취도형 문항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예컨대 표준 교육과정의 문제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면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의 정전화된 위계를 어느 정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될지 모른다. 만약에 이런 식의 진로를 택한다면 시험의 고부담성을 감안하여 전 사회적인 의제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인문학적 의제로서 몇 가지 문제들의 범위와 수준, 사회적 의제로서 어떤 문제들의 범위와 수준,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의 범위와 수준 등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현재 수준에서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연구 차원에서라도 중요한 인문·사회·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학문적

의제 설정을 위한 간학문적이며 집단적인 연구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아울러, 매우 실제적이며 부분적인 문제로 대학에서 ‘논술’ 영역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 그것을 대학의 자원에 맡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전문대학원에 대한 요구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전문대학원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대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하여 문제를 조금 거슬러서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의 내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를 대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첫째, 내부의 요구와의 대비. 시험에 대한 내부적 요구는 본질적이며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시험에 대한 관점은 대체로 내재적인 시각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법조계 내부의 의견과 만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예컨대 이러한 내부적 요구에서는 법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변화에서 ‘세계화’ 등의 화두를 중심에 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내적 요구에서는 직업인으로서 법조인의 내적인 자질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은 원래의 개혁 의도를 협소한 측면으로 변형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자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 거시적인 시각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개혁의 운영 측면에서의 강조는 제도를 내부에 자리한 불합리성의 함정에서 여전히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문제를 온존하게 하는 문제, 곧 부분의 합리성과 전체의 불합리성이라는 문제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법적 영역 내부의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줄지 모르나, 개혁의 원래적 요구 자체는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개혁의 효과는 단기적인 것

에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한계는 여전히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법조인의 전문가주의를 새롭게 생산해 내거나 적어도 강화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문대학원의 필요성에서 강조된 전사회적 의제를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개혁 자체의 의의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아직 그 개혁의 실험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사법 시험 개혁은 ‘신사법시험’ 합격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본래 법학교육 정상화의 취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 13쪽).

둘째, 애초에 제기되었던 ‘개혁’과 관련된 요구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법학적성 시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내부적 시각과 포괄적 시각은 조심스럽게 절충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법적 영역의 사회 내의 다른 영역과 차별성만을 강조하고 전문가주의만을 강조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학대학원의 입학시험이나 실제 교육 내용에서 실제적 문제의 중요성만큼이나 중요하게 다양하고 폭넓은 인문학적이며 사회과학적인 소양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문제의 원래의 소지가 입학시험이나 법학대학원의 교육만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폭넓게 준비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이 주로 법조인이 법에 대한 전문가주의의 핵심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면, 법에 대한 관점은 바뀔 필요가 있다. 여기서 법에 대한 관점은 ‘법이 나에게 무엇인가.’의 문제로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때 법에 대한 시각은 예컨대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서 법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인권의 차원에서 볼 때 법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다(영국의 경우 江口勇治, 2007 : 116 이하 참조).

실제로 법관의 법에 대한 이해는 실증주의적인 법 이해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필러 외, 2005). 그리하여 법조인의 임무는 현실적으로 단지 법의 적용, 해석에 그치지 않으며, 그쳐서

도 안 된다. 이것은 법학대학원의 설립 요구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법조인이 법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지식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법 자체에 대한 요구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될 수도 있어야 한다. 법 자체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만을 중심으로 문제를 다룰 때 극단적으로는 ‘법 준수’의 시각만이 법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할 수도 있다(江口勇治, 『한국의 법교육』, 『세계의 법교육 I』, 194 이하). 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법조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지만 그것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지니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법 자체나 법조인의 일에 대한 새로운 요청은 ‘개혁’이라는 측면에 모아진다. 다시 말하면 법학 전문대학원로의 형태 변화를 ‘개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한 ‘개혁’의 차원은 사실상 ‘전체 사회 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흔히 법 관련자의 법을 둘러싼 일은 단순화하면 ‘법 조문의 이해 → 법의 해석과 적용 →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입장에서의 개혁 요구는 상당히 단순화될 수 있다. 예컨대 변호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일을 잘 처리’하라는 요구, 극단적으로 법적인 쟁송에서의 수월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일로만 축소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인간적인 최소한의 자질을 갖춘’ 법 집행자나 법 관련자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요구는 ‘나는 상호 주체적으로 타자의 욕구와 전 사회 공동체의 욕구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 법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김주훈 외, 2006년의 서론 참조). 결국 법학 적성 시험이 ‘개혁’과 관련해서 제기된 요구임을 감안하여 법조계 내부의 합리성과 사회 전체의 합리성은 충분히 절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바로 법학교육의 방향 전환에 대한 요구에서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구는 실제로 법학적성시험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힘든 요구이기는 하다. 그것은 법학대학원 교육 전체를 통해서 나아

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인 습속의 변화를 통해서 완성해 나아가 할 장기적인 기획의 일부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법학적성시험의 방향이 인문학적 시각과 방법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별 시험 문항에서도 관철되어야하는 정신이기도 하다.

4. 사회학적 상상력의 필요 : 대학의 변모

사회적 의제로서의 전문대학원에 관한 관심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토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결국은 대학 교육의 양상 변화와도 관계가 크기 때문이다. 이 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변모되는 지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의제의 단과대학적 의제화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법학적성시험이나 법학대학원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의제로 확립되지 않았고 법조계 내부 혹은 법학계 내부의 의제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주로 대학 내부의 문제로 이 문제가 다루어질 경우에도 법학계 내부에서 문제를 좁아진 측면이 있다. 어떤 점에서 보면 토론의 초점이 교육행정적 측면에 치우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성원들의 선택과 관련된 논의는 별로 볼 수 없었던 듯하다. 인문학 등 기초과학의 위기 담론은 계속되었지만, 법학대학원의 문제는 사회적 의제가 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선택으로 맡겨지는 셈이다. 이는 단과대학 혹은 그에 준하는 대학원의 문제인 만큼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대학원 체제 이후 대학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없었던 문제가 새로 생겨난 것이라기 보다 대학의 직업 예비학교적 성격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문제가 질적으로 다른 평면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데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앞으로 학교의 지형이 달라질지 모른다. 문과계는 상당 부분 <표 2>, <표 3>을 중심으로 미래를 기획하는 학교 생활의 지형도가 그려질 것이다. 이 시험의 화용론적 효과는 문과계 대학뿐만 아니라 어찌면 전 대학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둘째, 시험의 보장적 기능과 시험으로 인한 개인 삶의 기획 기능의 결합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주체성 기획이 달라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학 전문대학원의 입시 문항이 상대적으로 암기형이 아니라 고차적인 사고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인해서 공부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이는 대학의 변모를 불러 올 것이다. 어찌면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대학 생활이 법학 전문대학원 입시를 중요한 축으로 하고 다른 것을 선택으로 하는 취업 기획이 세워질지 모른다. 성취도 중심의 시험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사고력을 묻는 ‘적성’ 시험적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적성’ 시험의 보편성은 향후 전문대학원 체제가 더욱 확대되면 범대학적인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을지도 모른다. 90년대 초반부터 캠퍼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인문학 관심도의 하락에는 80년대보다 악화된 노동 시장 악화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흐름과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커다란 흐름이 저류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소위 기본 도서실(학교 도서관의 개가식 도서실에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류의 서적이거나 또 교양 서적류를 몰아내는 데 기여한 거대한 흐름의 일부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어쨌든 전문대학원 시험으로 촉발된 이러한 변화가 대학의 모습에 향후 어떤 모습을 강제할 것인지 현재로서 명확히 단언하기는 힘들다. 어찌면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의 변모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끝나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을 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법학 한 분야로 인한 변화라는 점에서 이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으로는 노동 시장 열악화의 역학이 강제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지형도가 일부 달라질지 모른다. 이에 따라 ‘인문학’이나 사회 과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는 고양될지 모른다. 그러나 고사되어 가는 인문학에 한 가닥 새로운 흐름의 유입으로 논리학

등 일부 과목의 상대적 진출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직 이렇게 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사실상 표피적인 것으로 일부 학과의 단거적인 이해는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인문학의 견지에서 보면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더욱 커다란 영향력은 읽기 문항 자체에서 촉발되는 측면이 클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새로운 대학 독서문화의 진작을 위한 계기를 일정한 정도는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전체 문체의 해결을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활성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실마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그 정도는 단언할 수 없지만 대학보다는 어쩌면 출판계에서의 변모가 더욱 큰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과 출판계가 전혀 다른 행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넷째, 이러한 변화의 핵에는 읽고 쓰는 방식의 변모가 놓여 있다. 근대성 내부에서 시험이 지닌 해악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의 불가피성 위에서 노회하게 사고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물론 이러한 노회함이 문제를 어느 정도 돌파할 실마리를 제공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부분의 합리화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의 합리화의 단서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자체로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크게 보면 전문대학원 입시로 인해 강제된 대학에서의 읽기와 쓰기 조건의 변모는 대학 교육과정 변모의 강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전문대학원 체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5. 전제와 제언

이제 다시 구체적인 문체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몇 가지 간단한 전제를 생각해 보자.

첫째, 양호한 문항의 의미론적 요건. 이번에는 다시 문항 자체의 내재

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좋은 문항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읽기 문항의 경우 양호한 문항의 의미론적 요건은 읽기에서 좋은 문항은 대개 다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문항을 의미할 것이다.

- 문항 평가의 기본적 요인을 충족시키는 문항. 예컨대 물어야 할 것을 물었는가(내용 타당도), 적절한 정답물을 유지했는가(난이도), 획득 능력의 차이를 물었는가(변별도) 등의 조건이 유지된 문항
- 특히 지문의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문항. 이는 자발적 독서 (independent reading)를 위한 중요한 자극이 된다.
 - 좋은 문항에 대한 첫 번째 요구, 곧 복합적 고급 사고력을 묻는 문항으로 같은 깊이면 창의적 사고 활동을 요구하는 문항
 - 질문 형식과 응답 형식이 좋은 문항

둘째, 양호한 문항의 화용론적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읽기 활동의 본질과 관련된 질문을 수험자로 하여금 자발하게 하는 문항
- 나이가 좋은 문항은 그 문항의 효과가 자발적 독서나 어떤 분야의 계속적 탐구를 촉발시키는 문항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의미론적 조건을 최고의 기준이자 유일한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자칫 타당도나 난이도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하게 되고, 일견 좋은 문항인 듯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는 특히 객관식 고부담 시험의 경우 시험의 긴장도를 지나치게 높여서 시험 관리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없는지,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읽기의 과제에 대한 거리감을 가지게 하면서 자발적 독서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데만 도움을 주지는 않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 문항이라는 측면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면서 몇 가지 요구를 제

시해 보자.

첫째,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의 문항이 필요하다. 이는 대체로 강조되고 고려되는 요구이나, 실제로 시험의 전 과정을 통해서 관찰시키기에 는 쉽지 않은 요구이다. 지나치게 쉬워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어려워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예시 문항>

“서로 같지 않은 두 부분으로 나뉜 선분 하나를 생각해 보세. 그 두 부분을 각각 ‘눈에 보이는 부류’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라 부르기로 하고, 이 두 부분을 다시 같은 비율로 나누어 보게나. 그렇게 하면 그것들의 명확성과 불명확성의 정도에 따라 ‘눈에 보이는 부류’ 안에서 다시 나뉜 한 부분으로 영상(映像)이 자네에게 주어질 걸세. 이때 내가 말하는 영상이란 그림자, 물에 비친 상(像), 거울의 표면에 이루어진 상 같은 것일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류’ 안에서 나뉜 나머지 한 부분은 이 영상이 닮고 있는 실제의 것, 즉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공적인 일체의 것으로 간주하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애초의 두 부분이 진리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나뉘었고, 이때 ‘닮은 것’과 ‘닮음의 대상’의 관계는 ‘의견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싶겠지?”

“그리고 싶고 말고요.”

“① 그러면 이번에는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건 이런 식으로일세. 이 부류의 한 부분에서는 혼(魂, psyche)이 앞서 ‘닮음의 대상’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닮은 것’으로 다루어, 가정에서 원리(arche)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탐구하게 되네. 반면에 나머지 한 부분에서는 ‘무가정(無假定)의 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가정에서 나아가 앞 부분의 ‘닮은 것’도 거치지 않고 이데아를 이용하여 탐구를 진행한다는 말이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다시 말해 봅세. 나는 자네가 이를테면 이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 즉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

하는 사람들은 홀수와 짝수, 도형 같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말일세.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들로서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어떠한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이지.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나머지 것들을 거쳐서는, 애초에 탐구를 시작한 목표에 이르러 모순되지 않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도 말일세.”

“물론 그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이것도 알고 있을 걸세. 즉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도형을 이용하여 논의를 하지만, 그들이 정작 생각하는 것은 이런 도형이 아니라 그것이 닮아 보이는 원래의 것에 관해서이고,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사각형 자체나 대각선 자체 때문이지 결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일세. 그러나 이것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에 속하긴 하지만 이때 혼은 불가피하게 가정을 이용하게 되고 원리로는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는 혼이 가정에서 벗어나 더 높이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라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의 나머지 한 부분은 이성(logos) 자체가 변증술적 논변의 힘에 의해 파악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이성은 가정을 원리로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기반(基盤, hypothesis)으로 대할 뿐이라네. 다시 말해서 ‘무가정의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원리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나 출발점으로 대할 뿐이라는 말일세. 이때 이성은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이용하지 않고 이데아만을 이용하며 또 이데아에서 끝을 맺게 마련이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충분히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기하학자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지적 상태를 ‘추론적 사고’라 일컫지 ‘직관’이라 일컫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네는 내 말뜻을 아주 충분히 납득했네. 그러면 넷으로 나뉜 각 부분에 대응하여 혼 안에서 다음 네 가지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세나. 말하자면 최상위의 것에 대해서는 ‘직관(noesis)’을, 둘째 것에 대해서는 ‘추론적 사고(dianoia)’를, 셋째 것에 대해서는 ‘확신(pistis)’을, 그리고 가장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상상(eikasia)’을 배당하게나. 그리고 이것들을, 그 대상들이 진리에 관여하는 만큼 명확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비례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게나.”

—플라톤, 국가

11. 위 글로 미루어 <보기>에서 올바른 진술을 모두 고르면?(답지 생략)

— < 보 기 > —

ㄱ. 호수에 비친 달은 ‘상상’의 대상이다.
 ㄴ. 내가 앉아 있는 의자는 ‘확신’의 대상이다.
 ㄷ. 열매 속의 씨앗은 ‘추론적 사고’의 대상이다.
 ㄹ. 칠판에 그려진 직선은 ‘직관’의 대상이다.

12.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선분’이 나누는 기준은 명확성 혹은 진리에 관여하는 정도이다.
 - ② 존재하는 것들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는 이면에는 가치의 서열이 개재되어 있다.
 - ③ 존재하는 것들의 단계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일대일 대응 관계에 있다.
 - ④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이용하지 않고 도형이나 수 자체를 누구나 안다고 가정하고서 탐구한다.
 - ⑤ ‘눈에 보이는 부류’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에 대해 갖는 관계는, ‘의견의 대상’이 ‘인식의 대상’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13. ㉠에 대한 대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추론적 사고’와 ‘직관’이 갈리는 지점에서 나눈다.
 - ② 이데아만을 이용하여 탐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눈다.
 - ③ 변증술적 논변의 힘에 의해 파악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구별하여 나눈다.
 - ④ 눈에 보이는 도형을 탐구하느냐, 이 도형이 닮아 보이는 사물을 탐구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눈다.
 - ⑤ 가정에서 출발하여 결론으로 나아가는 부분과 가정에서 출발하여 ‘무가정의 것’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구별하여 나눈다.

(2006년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시의 11~13번 지문과 문항)

이 문항은 고전 작품 자체를 선다형 문항의 틀에 맞추어서 문항으로 변형한 것으로 고전 자체에 대한 탐색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 문항의 타당성 등에서 보면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출제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이 되어서 출제의 효과가 반감되어 아쉬움이 있다. 이 문항의 경우 정답률은 생각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난해한 텍스트의 경우 그만큼 더 과감한 운문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문항을 더 쉽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철학과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의견). 결국 이 접근성의 강조는 동양 고전이나 역사 등의 문항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결국 적절한 접근성은 그 학문에 대한 고사장 밖에서의 가독성 제고 문제와도 관련이 크다. 이는 논술 문항의 성패와도 무관한 것이 아닌 듯하다.

둘째, 평가에 대한 시각 교정의 필요. 시험의 사회적 관련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에 대한 내재적 요구만을 앞세우는 것은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평가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발생하는데, 기능적 수월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적응’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게 될 수 있다(지배적 요소의 동화에 의한 사회화와 사회 문제의 확대재생산 가능성). 그러나 시험은 그보다 상위 목적을 위한 기능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예컨대 평가 결과에 대한 예언 타당도 검사의 효과 측정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험의 그 성패 자체는 아닌 것이다. 예컨대 법학작성시험과 변호사로서 성공률의 비교는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여 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전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예언 타당도 조사는 필요하지만 그 경우 다른 맥락을 가미한 연구 설계 변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을 잘한다면 잘한 만큼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전체적인 영향 관계를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기초 학문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문의 개발 요구. 좋은 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대학 교수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좋은 글을 소개하고 그것에서 문제를 이끌어 내고 그것을 인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활동은 실상 대학 학문의 본질적인 측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반드시 시험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도 풍부

한 의미를 담은 좋은 지문을 개발하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읽을 만한 제재를 학생들이 읽는 것은 자발적 독서의 기회를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교육과 절차탁마 자체의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한다. 이를 조금 확장하여 지문 자체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어떤 점에서든 교수들의 중요한 인문학적 과제이기도 하다는 주장이 성립된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이 될 것인가.

물론 모든 것이 읽기나 쓰기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질적인 것은 사회 자체로부터의 교육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인 것을 매개로 해서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로마의 장군 코리올리누스에 대한 플루타르코스의 발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위대한 인물이 자신을 낳고 길러 준 공동체를 한순간에 배반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인물에 대한 전기의 말미에 나온 다음의 평가는 독서와 삶 그 자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강한 정신력과 용맹성, 끈질긴 인내력은 그로 하여금 훌륭한 업적을 많이 세우게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지나치게 자이를 고집하고 주변사람들의 기분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사귄 수가 없었다. 그는 쾌락도 고난도 다 안중에 없었고, 뇌물에도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를 절제와 인내, 정의라는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며 칭송하였다. 그러나 한 시민으로서의 성격이 엄격하고 매서웠으며 고압적이고 거만하여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미움을 샀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고 학문을 연구하며 목상을 즐기는 것이, 정해진 규범에 의해서 우리의 본성을 복종하고 극단적인 야만성을 피하여 인간답도록 교화시키는 가르침보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플루타르코스, 1994. 강조-인용자)

가르침의 근원, 가르침의 무의식적인 저류인 사회 자체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인문학 자체보다 아마도 선행하는 것일 터이다.²⁾ 그러나 우리는

2) 중국의 과거 제도의 상황에서 과거 제도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최진아(2001), 「傳奇로 읽은 唐代 남성의 욕망—愛情類 傳奇를 중심으로」, 『중국 소설논총』 9집(이 글은 河元洙(1995), 「唐代的 進士科와 士人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東洋史學科 博士論文를 주요 전거로 삼고 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1996), 박근

인문학 텍스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조건 자체인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결국 책이 언제나 문제의 본질은 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중요한 실마리 노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양한 지문 혹은 문항 제작의 필요.

- 화용적 추론 문항 도입 필요. 추론 문항은 다른 문항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의미론적 추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복잡한 화용론적 관련을 가진 문항의 제작이 필요하다(예컨대 소설이나 희곡 제재). 여기서 형식과 내용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지난한 일이지는 하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다채로움을 가진 제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항이 성공한다면 학생들은 그 자체 형식주의적 번다함이 적으면서도 풍부한 내용의 글을 읽어내는 훈련의 필요를 느낄 것이고 운이 좋다면 그런 글을 읽는 ‘기쁨’도 느낄 것이다.
- 좋은 대화 글이나 좋은 희곡 제재에서 보듯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담혀 있는 것은 아닌 듯이 보인다.
- 외국 문학 제재 활용 문제. 이 과정에서 외국 문학의 제재를 살리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예컨대 제재 자체의 상대적 마모에 근거한 소위 문항 제재의 ‘도덕적’ 한계와 관련된다. 한국문학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이 분야 종사자의 대전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상황에서 논리가 탄탄한 문항을 개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법 관련 서사나 좋은 희곡 제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더욱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일 수 있다.

다섯째, 어떤 문제에 대한 직관적 문제 제기를 풍부하게 포함하는 문항 필요.

칠·이근명 역, 『중국의 시험지옥—科擧』, 청년사. 이들 연구를 통해서 읽어야 하는 정전(正典) 텍스트에 대한 욕망이 생활 자체의 욕망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음을 명확히 엿볼 수 있다.

특정 제재 예컨대 법과 관련되지만 법학적인 개념을 구사하지 않으면서 법 자체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한 지문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법과 관련되지만 법의 한계를 사고할 수 있는 지문 혹은 법 문제에 대하여 끈질기게 사고한 포괄적인 내용의 지문 개발 요구가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개별 학문, 예컨대 수학과 관련되지만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적 직관을 높일 수 있는 지문도 필요하다.

6. 마무리

일본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법조 분야에 필요한 자질’로서 첫 머리에 ‘풍부한 인간성과 감수성’을 내세우고 있다(江口勇治, 2007 : 51). 이러한 강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법관에게 요청되는 ‘전문성’이나 ‘보편성’의 요구에는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냉엄한 사회적 요구가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모순되는 요청은, 법관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판결의 국면에서 법조문을 호출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법의 ‘적용’으로 이해하든 법의 ‘생산’으로 이해하든, 심지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언제나 마주치게 되는 일이다. 그것은 매 순간 법관 마음의 행간에는 인간에 대한 호기심과 그에 촉발된 감화된 마음자리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절박한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답하기 위한 중요한 문턱으로서 전문대학원 입시의 어깨는 너무 무거워 보인다.*

* 본 논문은 2008. 2. 23. 투고되었으며, 2008.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08. 3.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형일(1987), 「지식의 상품화 현상에 대한 기호언어학적 분석」, 김기석 편, 『교육사 회학 탐구』, 교육과학사.
- 교수신문(2007), 「미국·일본의 로스쿨 운영」, 『교수신문』 2007년 12월 10일.
- 김주훈 외(2006-), 「법학적성시험 기초 연구 결과발표 공청회 자료집(연구자료 : CRM 2006-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주훈 외(2006-), 「법학적성시험 연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연구보고 CRE 2006-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노명완·박창균(2006), 「읽기 평가들에 대한 비교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9-1.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 「일본의 법과대학원 설치·운영 실태-국의 출장 보고」.
- 조운형(2007), 「수능 언어 영역의 ‘평가목표’ 진술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진아(2001), 「傳奇로 읽은 唐代 남성의 욕망-愛情類 傳奇를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9집.
- 미야자키 이치사다(1996), 박근철·이근명 역, 『중국의 시험지옥-科擧』, 청년사.
- 뮐러·크리스텐센·소콜로브스키(2005), 이덕연 역, 『법텍스트와 텍스트 작업』, 법문사.
- 플루타르코스(1994), 김병철 역, 『플루타르크 영웅전』, 범우사.
- 임마누엘 칸트(1992), 이한구 역,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칸트의 역사 철학』, 서광사.
- 江口勇治(2007), 『세계의 법교육 I』, (주)한국학술정보.

<초록>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의 읽기 및 쓰기 문항에 관하여

문영진

1. 이 글은 주로 법학적성시험의 읽기 및 쓰기 문항에 관해 소개하고, 가능한 문제점을 진단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법학적성시험의 전체 시험 과목은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 등 3과목이다.
3. ‘언어 이해’의 인지적 영역은 ‘분석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로 구분된다.
4. 법학적성시험에서, 사회과학 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생긴다.
5. 논술 시험의 분량을 정량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2,500에서 3,000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논술 문항의 출제가 필요하다.
6. 법학 전문대학원의 설립이 ‘개혁’과 관련해서 제기된 것임을 감안하여 법조계 내부의 합리성과 사회 전체의 합리성은 절충되어야 한다.
7. 법학적성시험으로 인하여 대학 내부의 지적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8. 좋은 문항이 개발되어 대학 문화와 인문학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어】 법학적성시험, 언어 이해, 추리·논증, 논술, 인문학의 활성화

<Abstract>

On the Reading and Writing of LEET

Moon, Young-jin

1. In this paper I treated the following problems : introduction of Reading and Writing of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diagnosis of possible problems of LEET. And I made some proposals.
2. LEET is composed of following three subjects : Language Comprehension, Reasoning & Argumentation, and Essay.
3. The cognitive domain of Language Comprehension is composed of 'analytical understanding', 'inferential understanding', 'critical understanding', and 'creative understanding'.
4. Relative importance of Social Science will probably be raised in LEET. And then importance of the other subjects will be reduced.
5. The Subject of Essay should be contained about 2,500 or 3,000 letters. And in the course of making questions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matter should be considered.
6. There should be harmonized the rationality of the juridical world with the rationality of the whole society because that establishment of the Law School forms the part of 'reformation'.
7. The topography of intellectual map in the universities will be changed because of LEET. We should study this problem carefully.
8. For the sake of activating the university cultures and the humanities, we should have many good and proper LEET items.

[Key words] LEET, Language Comprehension, Reasoning & Argumentation, Essay, activation of humanities

【토론문】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의 읽기 및 쓰기 문항에 관하여”에 대한 토론문

유성호(한양대)

법학 전문대학원 출범에 따른 우리 사회의 지각 변동은, 그동안 법조계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던 과장된 위상에 걸맞게, 매우 커다란 편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전공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의치학 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데 골몰하는 것처럼, 인문 사회계 전체가 로스쿨의 예비학교가 될지도 모른다는 학문 절멸의 분위기가 캠퍼스를 감도는 것도 그 부정할 수 없는 그림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듯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인력이 비교적 우수한(기준은 정말 다양하겠지만) 자원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결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영진 선생님의 이 시론적(試論的) 논의는 이제 막 첫 삽을 뜨는 법학 전문대학원 입시의 방향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데 매우 알맞은 시의적 고언(苦言)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흔히 학술대회에서 따라붙게 마련인 ‘토론(討論)’의 역할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실증이나 해석 혹은 평가에서 일정한 이견(異見)을 가지고 묻는 토론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볼 때, 그동안 오랜 경험을 가진 발표자에 비해 토론자는 고민의 시간이 형편없이 짧고 전문적 정보 수렴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어교육계에 무겁게 다가오는 이 현실적 난제 앞에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에서 토론에 임할까 생각해봅니다.

2006년 의치학 전문대학원 언어 추론에서 출제되었던 플라톤의 『국가』를 예로 들면서 선생님께서는 원(原)텍스트 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윤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 하지만 고전을 제시문으로 인용할 때, 원문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전공자들 사이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 원문 변형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법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동서양의 고전을 읽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쉬운 번역과 대폭적 윽문 사이의 국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꼭 플라톤의 예가 아니더라도, 출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논의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 상황 자체를 연상시키는 텍스트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과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치환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항이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거지요. 문학 제재가 여러 모로 적절할 터인데, 과거 의치학 전문대학원에서는 읽기 제재로 문학 지문이 시, 소설, 희곡이 하나 정도 들어갔던 것에 비해 법학 전문대학원에서는 그 비율이 어떻게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예에서 “풍부한 인간성과 감수성”이 법조 분야에 필요한 덕목이라는 예를 드셨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엉뚱하게도, 법적 판단에서는 인간성이나 감수성보다는 상황의 통계성과 그것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균형 감각이 더 요구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인문학이 지향해야 할 것이 상상력이나 감수성보다는 사회성과 합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학 종사자들에게 인간성과 감수성을 강조하다 보면 지나친 정의적 캐릭터로 흐르지는 않을까요. 하나하나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의사나 법관은 감수성보다는 사회적 태도와 상황의 복잡성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요.

문영진 선생님의 시론적 논의가 많은 이들의 동참 속에서 더 튼튼한 살을 얻어가기를 희망합니다.